

#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4. / /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- 2011. 2. 5. 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조문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도로법 제40조 및 영 24조를 도로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로 개정(안 제2조)
- 도로법의 소액 점용료 징수제외 부분을 조례에 반영 단서조항을 신설(안 제4조)
- 도로점용료 감면내용 정비(안 제5조 제1항, 제2항)
-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·징수할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(6%)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6조 제2항)
- 도로점용료 기준에서 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,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·출입로 용도의 도로점용료 조정(별표 1)
- 점용료 부과 시 인접한 토지의 토지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가격으로 개정 (별표1의 비교 1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도로법 제38조, 제42조, 제84조, 제94조
- 도로법 시행령 제28조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3. 9 - 3. 28 (20일간)

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3. 9 ~ 3. 28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따로붙임

- 방침결정문
- 현행조례(전문)

# **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”로, “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”를 “제94조에 따라 징수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준에 의하여”를 “기준에 따라”로 하고,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”를 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”으로, 같은 조 제1항 제1호중 “건설교통부령이”를 “국토해양부령으로”로, “비영리사업”을 “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해양부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에 의한

다.” 를 “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되,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
2.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
3.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

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1조 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·징수하고,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,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,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
-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점용료 등의 강제징수) ① 점용료나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국세징

수법」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.

③ 점용료나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점용료 등의 조정)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8조에 따라”로,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해양부”로 한다.

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 중 “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”를 “제14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”로 한다.

별표1의 진·출입로의 점용료란 중 “0.025”를 “0.02”로 한다.

별표1의 비고 1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, “인접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별표1의 비고 2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건설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설과장 이태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로행정담당 김왕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영훈 (행정 2422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 변상금·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필요한</u> -----</p> <p>--.</p>
<p><b>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</b>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,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.</p>	<p><b>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</b> -----</p> <p>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제94조에 따라</u> 징수 한다.</p>
<p><b>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</b> ① 점용료는 “별표1”의 기준에 <u>의하여</u> 산정한다.</p> <p>② <u>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 별로 산정한다.</u></p>	<p><b>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</b> ① -----</p> <p>기준에 따라 -----.</p> <p>② <u>변상금의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u></p>
<p><b>제4조(소액점용료징수제외 및 반환)</b> ① 제3조의 규정에 <u>의한</u>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,000 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&lt;신설&gt;</p> <p>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조(소액점용료징수제외 및 반환)</b> ① -- 조에 따른 ----- 다만,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- 제84조에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5조(점용료의 감면)</b>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<u>건설교통부령</u>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<u>비영리사업</u></li> <li>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</li> </ol>	<p><b>제5조(점용료의 감면)</b> ①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-----.</p> <p>1. ----- <u>국토해양부령</u>으로 -----</p> <p>-----</p> <p>- <u>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</u></p> <p>2. -----</p>

<p>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시설, 가스공급시설,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</p> <p>3.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</li> <li>2.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.</li> <li>3.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.</li> </ol> <p>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.</li> <li>2.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하여야 한다.</li> <li>3.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.</li> </ol> <p>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<b>제6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</b>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·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부과·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·징수한다.</li> </ol>	<p>----- 그 밖에 ----- -- 국토해양부 -- -</p> <p>3.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</p> <p>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</p> <p>②제1항에 따른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되,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</li> <li>2.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</li> <li>3.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<b>제6조(점용료등의 부과·징수)</b> ①- 제41조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.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·징수하고,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3.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,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,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</p>
<p>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</p>	<p>③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
<p>④〈신설〉</p>	<p>④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
<p><b>제7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</b>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<b>제7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</b> ①점용료나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</p>
	<p>②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.</p>
<p><b>제8조(점용료등의 조성)</b>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%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<b>제8조(점용료등의 조정)</b>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
<p>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<p><b>제9조(수수료의 징수)</b>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	<p><b>제9조(수수료의 징수)</b> ①- 제38조에 따라 ----- ----- 국토해양부 -----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><b>제10조(이의신청)</b> 점용료·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</p>	<p><b>제10조(이의신청)</b> ----- ----- 제140조</p>

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-----.

[별표 1]

###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(제3조 관련)

(금액단위 : 원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
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~3.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
4.주유소, 주차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 화물터미널, 자동차수리소, 승강대, 화물적치장, 후계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건축물	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5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6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65를 곱한 금액
5.~10. (생략)	진·출입로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
	기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[별표 1]

###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(제3조 관련)

(금액단위 : 원)

※ 日 午

1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  2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.
  3. ~ 10. (생략)

※ 비 고

- 도로접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 ----- 도로접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-----  
-----
  - -----  
-----
  - ~ 10. (현행과 같음)